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3년 11월 29일 정지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충북도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과 실력있는 예술감독을 채용하기 위하여 예술감독의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하고, 비상임 단원의 상임단원화에 따라 비상임단원을 삭제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악단과 사무국의 설치(안 제2조제2항과 제3항)
- 단원의 구분(안 제4조)
 - 단원은 악장, 수석단원 및 정단원으로 구성
 - 지휘자는 예술감독이 겸함.
- 겸직금지의 변경(안제12조제1항)
 - 예술감독의 겸직금지 삭제

4.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과 실력을 가진 예술감독을 채용하기 위하여 예술감독의 겸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에 따른 비상임단원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상임단원의 명칭변경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